

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1.

성평등가족부장관

1. 인증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 제15조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 **(탄력적근무제도)** 선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 연차사용 등
- **(근로자 및 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휴직·휴가,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다양한 가족지원 등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여가활동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성평등 직장교육 실시 등

★ 단계적 인증 안내

 <p>예비인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중소기업 · 기준 : 중소기업 대상 인증기준 보다 낮은 총70점 중 30점 이상 획득 시 부여 ※ 정성지표를 제외한 정량지표만 심사 	 <p>인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기업·공공기관 등 · 기준 : 총 100점 중 중소기업 60점, 중견기업 65점, 대기업 등 70점 이상 획득 시 부여 	 <p>선도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가족친화인증을 12년 이상 유지한 기업 ※ 공공기관 제외 · 기준 : 재인증 통과점수, 우수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	---------------------------------------------------------------------------------------------------------------------------------------------------------------------------------------------------------------------------------------------------------------

2. 신청 안내

□ 신청개요

○ (신청기간) '26. 4. 1.(수) ~ 5. 29.(금)(재인증 : ~ 5.27.(수))

* 마지막 주는 신청이 많으므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5월 셋째주까지 신청 권장

○ (신청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이하 '누리집', www.ffsb.kr)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신청 시 입력한 메일 및 연락처로 향후 세부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필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별첨1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온라인 업로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및 운영실적, 인증배제사유 해당여부	온라인 작성	
선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온라인 업로드	해당 기업에 한함

※ ① 인증신청 시 기업 등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서류심사 과정에서 누락이 확인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누리집(www.ffsb.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또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공고.행사

3. 인증 절차

□ 세부 절차 및 일정(안)

공고	인증 신청	심사 (서류, 현장)	심의 및 결과 발표
3월 31일	→ [신규] 4월 1일 ~ 5월 29일 [재인증] 4월 1일 ~ 5월 27일 ※ 설명회 : 4~5월	→ 6월~9월	→ 10월~12월

※ 일정 변동 가능

- (서류심사) 신청서 등 제출서류 확인하여 심사
- (현장심사) 기업·기관에 방문하여 제도 운영 실적 등 확인하여 심사
 - (심사일수) 신규인증 1일(심사원 2인), 재인증 0.5일(심사원 1인)
 - ※ 기업과 협의하여 현장심사 일정을 결정하며, 확정 후 심사취소는 불가합니다.
(취소 시 차년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심의) 인증 배제사유 확인 및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 여부 확정
- (결과발표) 12월 결과 발표(예정)
 - ※ 인증심사 피드백보고서, 근로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는 누리집에서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 심사비용 및 납부방법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등**	납부방법
신규인증	무료 (심사비 지원)	1,000,000원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 부가세 별도
재인증		500,000원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예비인증 포함) 심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심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

4. 인증 기준

□ 인증 기준

※ [붙임1]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6-5호) 참조

구분		심사 항목	통과 기준 ¹⁾
신규 인증, 재인증	중소기업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 5점 이상 필요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점(최대 15점)	60점 이상 (100점 만점)
	중견기업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 5점 이상 필요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 30점 이상 필요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감점(최대 10점)	65점 이상 (100점 만점)
	대기업 등 ²⁾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 5점 이상 필요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 35점 이상 필요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감점(최대 10점)	70점 이상 (100점 만점)
예비인증 ³⁾	중소기업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점(최대 15점)	30점 이상 (70점 만점)

1) 통과기준은 가점을 포함한 점수임

2)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중견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이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3) 예비인증은 중소기업당 1회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내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증 심사에서 이미 평가를 받아 득점한 항목은 해당 배점을 받은 것으로 한다.

□ 선도기업

- (대상) 올해 재인증 대상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12년 이상* 연속 유지하고 선도기업 심사에 동의한 기업
 - * '09년, '12년, '15년 신규 인증을 획득한 기업
- (인증 점수) 재인증 통과 점수보다 10점 이상 상회(가점 포함)
 - * 중소기업 70점 이상, 중견기업 75점 이상, 대기업 80점 이상
- (심사)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업종별 특성,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통 사항

-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 인증 배제사유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
- ②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
- ③ 체불사업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
- ④ 폭력예방교육 부진으로 명단공표된 공공기관
- ⑤ 최근 2년 이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한 사업장
- ⑥ 최근 2년 이내 언론보도, 민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가족친화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

- 근로기준법 : 제23조제2항(산전·산후 여성 해고 제한), 제53조(연장근로 제한), 제70조~75조(모성보호제도 준수), 제76조의2~3(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 양성평등기본법 :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전체 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3(고충처리),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3(고충처리)

5.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
 - 예비인증, 선도기업 유효기간 3년 동일
 - 단, 예비인증은 중소기업당 1회에 한하여 부여

□ 인증 표시의 사용

-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 ※ 「가족친화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

기 업	공공기관
	

(가족친화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 인증서 발급

- 인증 선정 후 우편으로 발송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도 개별 다운로드 가능
 - ※ 누리집(www.ffsb.kr)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내역확인 → 인증서발급

6. 기타 안내

□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구분	내용	접수방법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인증절차 안내 ■ 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기준 및 제출자료 관련 안내 ■ 질의 응답 	
설명회	오프라인 (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4.14), 부산(4.15), 경북(4.16), 광주(4.17), 충북(4.21), 강원(4.22), 제주(4.23), 서울(4.28), 대구(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설명회 참여신청 ※ 회차별 선착순 모집 마감
	온라인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목), 5.13(수), 5.21(목) ※ 지역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설명회 참여신청 ※ zoom회의 참여 링크 및 설명회 자료 제공

□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 (가족친화 인증 및 규정지원 컨설팅) 가족친화인증 신규 및 재인증 준비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과 지표 검토 등을 지원
-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컨설턴트가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을 방문하여 가족친화 제도 운영 현황을 진단한 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 재인증 심사 시 '가족친화 문화컨설팅 시행' 항목 가점 인정
- (직장교육 지원)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제공
 - ※ 신규, 재인증 심사 시 '가족친화·성평등 조직문화 직장교육 실시' 항목 인정

7. 문의처

- 인증신청 및 심사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 9034, 9042
- 컨설팅 및 직장교육 :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671, 7673, 7675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 www.ffsb.kr

별첨 1.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2. 【참고】 필수증빙 리스트 및 근로자 명단 작성예시(현장심사 준비용)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재인증

분야	심사항목	배점			
		대기업 등	중소기업		
			출산양육 친화형	가족친화 조직문화형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0	10	10	
가족친화제도 실행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5	5	-
		여성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5	-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5	-	-
		남성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	-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15	-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5	5	5
	탄력적 근무제도	유연근무제 활용률	10	10	15
		연차사용률	5	5	5
	근로자 및 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5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5	10
		자녀교육지원제도	-	-	10
		다양한 가족 지원제도 (1인가구, 무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 등)	5	5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여가활동 지원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5	10	
	가족친화·성평등 조직문화 직장교육 실시	5	5	5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20	20	
총계			100 (가점 제외)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이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 중소기업 '출산양육친화형' 심사항목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가족친화 조직문화형'으로 심사한다.

나. 예비인증

- 예비인증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심사항목 중 선택한 일부 항목을 평가하여 2. 나. 의 점수(30점, 가점 포함) 획득 시 부여한다.
-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내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증 심사에서 이미 평가를 받아 득점한 항목은 해당 배점을 받은 것으로 한다.
- 예비인증은 중소기업당 1회에 한하여 부여한다.

분야	심사항목	배점		비고	
		출산양육 친화형	가족친화 조직문화형		
가족 친화 제도 실행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5	-	선택 가능
		여성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5	-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5	5	
	탄력적 근무제도	유연근무제 활용률	10	15	
		연차사용률	5	5	
	근로자 및 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10	
		자녀교육지원제도	-	10	
		다양한 가족 지원제도 (1인가구, 무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 등)	5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여가활동 지원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10	
		가족친화·성평등 조직문화 직장교육 실시	5	5	
총계		70 (가점 제외)			

다. 가감점 심사항목

(신규인증, 재인증, 예비인증 동일 적용)

가감점 심사항목	배점	
	중소기업 최대 15	대기업 등 최대 10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10	10
직장어린이집설치(※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3	3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3	미해당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3	3
육아기 또는 임신기 재택근무 이용	3	3
대체인력 채용	3	3
난임 휴가 및 휴직 이용	3	3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운영	3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3	3
난임치료비 지원	2	2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지급제도 운영	2	2
유·사산 휴가 법정기준 초과 이용	2	2
탄력적 근무제도	5	5
조기퇴근제 시행	3	3
시간 단위 연차제도 운영	3	3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이하 운영	3	3
육아기 10시 출근제 운영	3	3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5	5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3	3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3	3
장기근속 휴가·휴직 지원	3	3
주택지원(자금대출, 사택지원 등)	3	3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3	3
가족친화문화 조성	5	5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캠페인)	3	3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3	3
여성임원비율	3	3
협력업체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3	3
(재인증 한정) 가족친화 문화컨설팅 실행	3	미해당
관련 인증 및 수상 실적	3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3	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주관)	3	미해당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3	미해당
감점항목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미해당	-2

* 5개 제도 내 각 항목에 대해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인정점수 범위 안에서 가점 부여

2. 인증 통과기준

가. 공통사항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제53조·제70조부터 제75조까지·제76조의2·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67조의3

나. 신규인증, 재인증, 예비인증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신규 인증, 재인증	중소기업	60점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중견기업	65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대기업 등	70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예비인증	중소기업	30점	- 가점을 포함하여 3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경영만족도'는 포함되지 않음)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중견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이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우대사항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2. 나. 의 인증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본다.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을 받은 기업은 해당 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탄력적 근무제도' 심사항목의 배점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

3. 가족친화인증위원회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을 심의한다. 또한, 당해 연도 재인증 심사를 신청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장기간 인증을 연속 유지한 기업에 대해 우수사례 등을 심사하여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2

가족친화인증 주요 인센티브

❖ 전체 인센티브는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업(관)인센티브) (근로자인센티브)

	주요 내용	대상	제공기관
세무	•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국세청
	• 세정지원 우대(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체납자 회생지원, 수출환급지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규 확대 예비인증 포함	중소기업	관세청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규 확대	중소기업	서울대규, 인천대전전남
	• 지방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분) 면제)	중소기업	제주
정책자금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가점 신규	전체기업	고용노동부
	• 고용안정장려금 가점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가점 예비인증 포함	중소·중견기업	고용노동부
	• KITA 무역진흥자금 지원 가점 예비인증 포함	중소·중견기업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가점 및 우대	중소기업	서울부산대규, 인천대전 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부조달	• 물품구매, 계약이행, 일반용역, 기술용역, 시설공사 심사 가점 신규 확대 예비인증 일부포함	전체기업	조달청
	• 물품구매, 일반용역, 기술용역 심사 가점	전체기업	국방부
	• 물품구매, 계약이행 심사 시 가점	전체기업	방위사업청
	• 물품 적격 심사 신인도 가점(한국전력기술(주))	전체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가점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 정기근로감독 면제	선도기업	고용노동부
정부지원	•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 우대	중소기업	금융위원회
	•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 가점	전체기업	고용노동부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대	공공기관	재정경제부
	•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 지원사업 가점	중견기업	산업통상부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가점 예비인증 포함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가점 예비인증 포함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감면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신용보증료 0.2%p 감면, 보증한도 우대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료율 감면, 보증한도 우대	중소기업	서울부산대규, 인천광주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요 내용	대상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출금리 우대 예비인증 일부포함 	중소기업	SC제일은행	
		중소·중견기업	IBK기업,KB국민,산한하나,한국수출입은행	
		전체기업(관)	수협은행	
홍보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 	중소·중견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가점 신규 	전체기업(관)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인증기업 대상 차년도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할인 	중소·중견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가점 신규 	중소기업	한국관광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송출비 지원 및 제작비 지원 신청 대상 포함) 	중소기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친화인증기업 전문채용관 운영 신규 확대 	전체기업(관)	고용24기업인력지원센터 아이온잡 잡코리아	
출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 심사 우대 	전체기업	법무부	
근로자 지원	관광·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잡월드 체험료 혜택(보호자 1인 무료 등) 	전체기업(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장료 및 체험료 할인(휴양림,놀이공원,뮤지엄 등) 	부산대구,인천충북,전북전남경북제주인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이용료 할인 신규 확대 	부산대구,인천충북,전북전남경북제주인증기업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문화활동 지원 및 공연·영화 할인 	부산대구,인천전북,전남제주인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대관료 할인 및 면제(문화회관,수련원,체육관 등) 	부산충북인증기업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 구매 및 음식점 할인 신규 확대 	부산대구,광주충북,전북전남경북제주인증기업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 감면 및 상담지원 신규 확대 	부산,대구,인천,충북,전북,경북,제주인증기업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업(관) 임직원 개인예금 금리우대 예비인증 포함 	전체기업(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서비스(법률,건축,노후준비 등) 	대구,전북인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국가자격증,평생교육원 등) 신규 확대 	대구,전북,경북인증기업	

- 가족친화인증은 인증 이후에도 기업이 가족친화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령위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함
 -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인증취소 등 조치함
 - 인증이 취소된 기업·기관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법적근거) 「가족친화법」 제17조의2와 제18조,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 시행규칙 제13조

점검 항목	관련 법령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 미달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고의의 임금체불 여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제53조,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6조의2, 제76조의3 ▶ 「남녀고용평등법」 전체 조항
언론보도, 민원 등 사회적 물의 야기	▶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기업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연 1회 이상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